

Q & A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자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 1. ~ 12. 31) 발생한 총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이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 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 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Question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있어 사무직 및 생산인력부서(은행권 등의 검사업무)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별로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생산인력부서(여직원임)는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으로서 책상형 작업대에서 의자에 앉아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이며 소음 등은 발생하지 않음
- 방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시간은 1회 10분에서 30분정도를 반복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교육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 다른 교육실시방법 중에 근무시간 매 5분 전에 구내방송을 통하여 매일 전 직원에게 방송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시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노동부예규 제178호, 90. 11. 10)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동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훈련시간에 훈련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회사와 협조되지 않아서 일과 시간 후에 기숙사에서 본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3)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숙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조사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2),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심의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한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업내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